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6. 10.(수) 15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서동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0년 5월 29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

- (현행)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

- 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체험학습에 자유학기의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을 추가(안 제2조)

○ 교육감의 책무 신설(안 제3조)

○ 체험학습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○ 지원방법 신설(안 제6조)

○ 체험학습 안전교육 신설(안 제7조)

○ 협력체계 구축 신설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원방법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일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음
- 안 제5조에서는 체험학습비 지원대상자를 충북 도내 국·공·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정하고,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체험학습 실시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
- 본 조례 개정안은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요한 자유학기제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, 나아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복지 혜택의 증진이 기대되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